



의안번호

제148호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19. 10. 14.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제148호
----------	-------

제출연월일 : 2019. 10. 14.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2020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방벤처센터 개요】

- 설립 : 국방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벤처 설립계획 승인(2002.04.)
 - 충남국방벤처센터 개소(2019.09.05.)
 - ※ 2003년 서울시 시작 → 2019년 9월 충남 논산 설치, 전국 10개소 운영
- 기능 : 국방분야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도 및 획득관련 정보 제공
 - ※ 민수분야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국방산업 분야 진출 지원 및 보유기술 활용 군수품 개발 지원
- 성과
 - (국방매출) 중소·벤처기업 협약 후 국방분야 매출액 증가
 - ※ 증가율 10.5배(5%→56%), 자기자본순이익률 2.3배(6.7% → 15.3%) 증가
 - (군납 기업수) 2005년(2업체) → 2017년(141업체)

□ 충남 국방벤처센터 설립 배경

-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방위산업분야 핵심 부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는 중소벤처 기업 육성 및 방위사업 진출의 교두보 확보 및 지역 방위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 국방벤처센터 출연금 납부 현황(전국 10개소)

센터명	설립	업체	예산(억)	센터명	설립	업체	예산(억)
서울	2003	17	2.1	광주	2013	39	4.0
부산	2008	41	3.0	구미	2014	50	4.0
경남	2009	47	4.0	전남	2015	32	4.0
전북	2009	31	4.0	울산	2019	15	4.0
대전	2011	50	4.0	충남	2019	19	4.0

□ 출연계획

- 출연금액: 400,000천원(2020년 본예산 편성 예정/도비50%,시비50%)
 - 국방도시건설-국방산업육성 및 지원-충남 국방벤처센터 운영 지원
 - 출연금-출연금

□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

- 폐쇄적인 국방산업의 특성 상 중소기업 독자적 참여 제한
 - 국방시장의 특수성을 잘 아는 전문기관 지원 연결
- 국방벤처 사업을 통해 **충남 지역 중소기업**은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성장기회 마련, 우수 조달원 및 기술경쟁력 확보

□ 관련법규

- 「방위사업법」 제32조
-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①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⑥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방과학기술의 기획에 대한 업무지원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분석
2.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업무지원
3.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에 대한 지원
4.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통합관리
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8. 군수품에 대한 수출·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4조(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충청남도, 논산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국방산업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참고2

국방벤처센터 현황

□ 국방벤처센터 운영 현황(전국 10개소)

‘19.10월 기준

센터	설립	지원 기업수	예산 (억원)	운영 형태	센터	설립	지원 기업수	예산 (억원)	운영 형태
계	10개 벤처센터, 341개 기업, 36억원								
서울	‘03.09.	17	2	입주형	광주	‘13.12.	39	4	협약형
부산	‘08.12.	41	2	협약형	구미	‘14.03.	50	4	협약형
경남	‘09.09.	47	4	협약형	전남	‘15.09.	32	4	협약형
전북	‘09.09.	31	4	협약형	울산	‘19.08.	15	4	협약형
대전	‘11.11.	50	4	협약형	충남	‘19.09.	19	4	협약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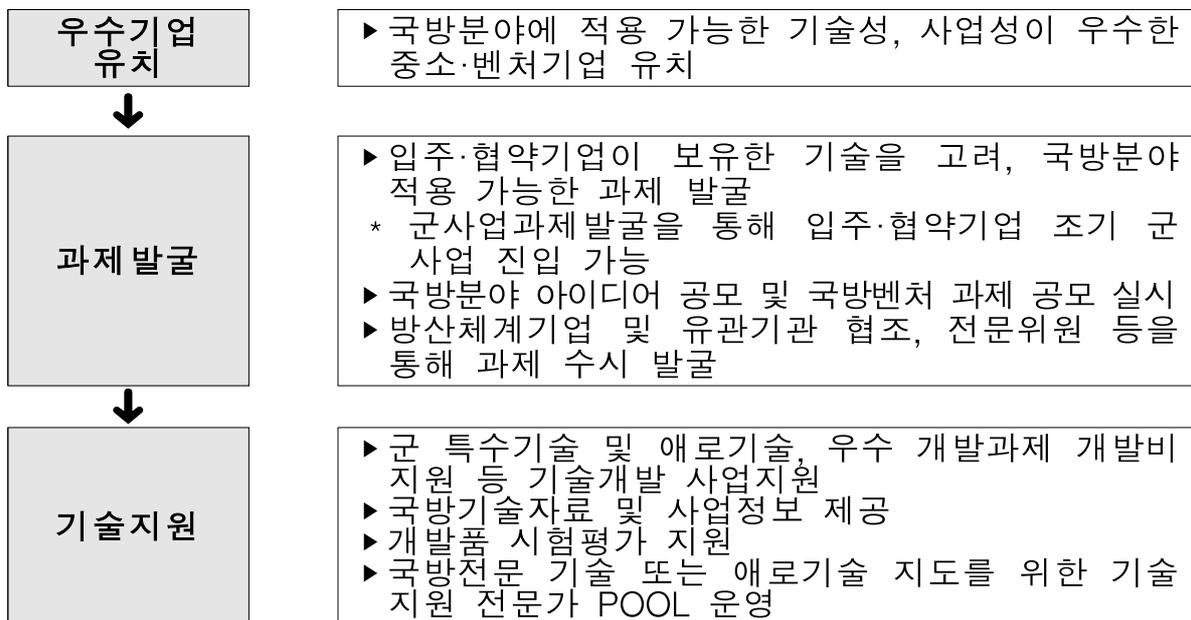
※ 입주는 일정건물 내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형태이며, 협약은 사업장의 별도 이동없이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형태

□ 주요 지원내용

○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

- 협약기업 보유기술을 활용한 軍시장 진입 가능한 과제 발굴
- 중소·벤처기업 국방관련 우수과제 개발비 지원(지자체 예산)
- ‘국방벤처 지원사업’ 참여(방사청 예산) * ‘15년 최초 시행 / ‘18년 예산 43.4억원
- 기품원의 국방 기술기획/품질경영/기술정보 등 네트워크를 지원에 활용

○ 지원 프로세스



경영지원
협력네트워크 구축

- ▶ 인증, 지적재산권 획득지원
- ▶ 전시회 참여 및 홍보마케팅 지원
- ▶ 기술 및 제품 홍보
- ▶ 국방벤처아카데미 등 교육지원
- ▶ 각 군, 국과연, 방사청 등 유관기관 협조
- ▶ 주요 체계방산기업과 개발사업 협력 등 각종 업무교류 추진



<성능시험 지원>



<기술개발 지원>



<판로개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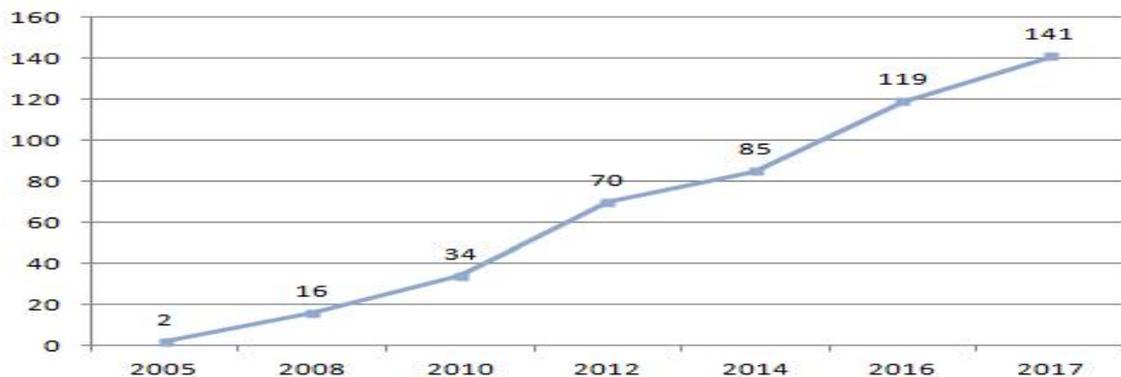
□ 운영성과

○ 지원한 국방벤처 기업이 998개 국방 연구개발 사업 참여('0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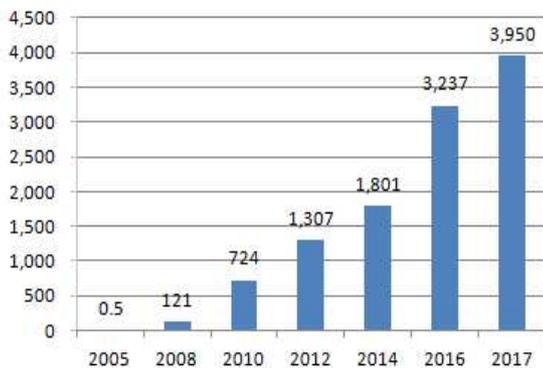
구분	과제수	비고
국산화 개발	187	유지, 양산, 핵심부품, 구매조건부 국산화 개발 - 위성통신장비용 도파관스위치 등
업체자체개발	229	기업이 전액 투자하여 신제품 또는 기술을 개발 - 105mm, 155mm 용 포신손질봉 등
정부지원 기술개발과제	292	방사청 등 정부부처, 지자체, 민군협력과제 등 수행 - 차세대 유도무기 구동장치 등
체계업체 협력	133	체계업체 요청개발, 체계업체와 컨소시엄 - 차기소총용 LRF 송수광 모듈 등
판로개척	157	방사청 입찰, 부대조달 등 기업제품 직접 납품 - 모의 적재탄 조립체

○ 국방벤처 입주·협약기업 국방매출 달성('0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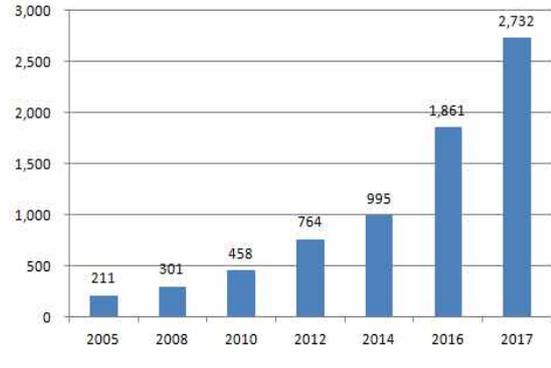
- 국방 매출 발생 기업 수 지속적으로 증가



- 국방벤처센터 개소 이후 583개 중소·벤처기업을 보육하여 16,815억원의 군 매출 달성
- 중소·벤처기업이 국방벤처 입주(협약) 후 국방분야 매출액 증가 (국방벤처센터 지원이 중소·벤처기업 군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
 - * 국방벤처 입주·협약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이전 3년부터 입주 후 3년까지 총 7년간 국방분야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로 2013년 (사)공공기관경영연구원에서 실시
- 국방사업 확대에 의한 고용증가로 일자리 창출효과('05~'17)
 - 국방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고용 유발
 - * 최근 4년간 국내 방위산업 고용은 연평균 6.3%씩 성장하여 동 기간 타 제조업의 고용증가율 1.1% 상회(R&D 인력비중 26%) _2013.8 KIET 산업경제분석
 - 2017년 국방벤처 기업의 2,732명이 국방사업 종사
 - 국방벤처센터 입주(협약) 이후 고용 증가
 - * 국방벤처 입주·협약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이전 3년부터 입주 후 3년까지 총 7년간 일자리 증감을 조사한 결과로 2013년 (사)공공기관경영연구원에서 실시



보육기업 국방매출(단위 : 억원)



보육기업 일자리 창출(단위 : 명)

○ 기타 무형의 효과

- 언론매체 등에 긍정 보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긍정적 이미지 제고



경향신문 <2016.10.01.>



국방TV <2016.12.26.>



충청투데이 <2019.09.06.>